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으로 객차 내에 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법적의무로 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대상 객차를 정하고, 철도운영자에게 객차 내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유무에 대해 여객 등에게 공지의무를 규정하며, 객차 내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31호, 2020. 5. 27. 공포, 2021. 1. 1. 시행) 제76조의2에서 정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을 시행령으로 상향입법 하고자 함임.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객차를 정의(안 제30조제2항)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이 동력차에서 객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객차를 정의함으로써 그 밖의 다른 철도차량과 구별하고자 함

나.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안 제30조의2)

현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31호, 2020. 5. 27. 공포, 2021. 1. 1. 시행) 제76조의2에서 정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객차 내에 설치되는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 대상을 개정(안 제31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객차 내에 설치한 영상기록장치를 여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의무를 철도운영자에게 부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철도공안”을 “철도경찰”로 한다.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차”란 승객 설비를 갖추고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객차를 말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①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상기록장치를 동력차에 설치하는 경우 선로변을 포함한 철도차량 전방의 운행 상황 및 운전실의 운전조작 상황에 관한 영상이 촬영될 수 있는 위치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실의 운전조작 상황에 관한 영상이 촬영될 수 있는 위치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무인운전 철도차량
2. 다른 대체수단을 통하여 철도차량의 운전조작 상황이 파악 가능한 철도차량
3. 전용철도의 철도차량

②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상기록장치를

객차에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차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할 것
2.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범죄 상황 파악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상기록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상황에 대한 영상이 모두 촬영될 수 있을 것
 - 가. 여객의 대기·승하차 및 이동 상황
 - 나. 철도차량의 진출입 및 운행 상황
 - 다. 철도시설의 운영 및 현장 상황
2.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이 충격을 받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등 정상적이지 않은 환경에서도 영상기록장치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을 것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전실 출입문 등 운전업무종사자”를 “운전실 및 객차 출입문 등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따른 <u>철도공안</u>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6. ----- ----- ----- -- <u>철도경찰</u> -----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제30조(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	제30조(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차”란 승객 설비를 갖추고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객차를 말한다
② ~ ④ (생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u><신 설></u>	<u>제30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① 철도운영자등</u>

은 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상기록장치를 동력차에 설치하는 경우 선로변을 포함한 철도차량 전방의 운행 상황 및 운전실의 운전조작 상황에 관한 영상이 촬영될 수 있는 위치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실의 운전조작 상황에 관한 영상이 촬영될 수 있는 위치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무인운전 철도차량
2. 다른 대체수단을 통하여 철도차량의 운전조작 상황이 파악 가능한 철도차량

3. 전용철도의 철도차량

②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상기록장치를 객차에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차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할 것
2.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범죄 상황 파악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제31조(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9조의3 제2항에 따라 <u>운전실 출입문 등</u> <u>운전업무종사자</u>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	3. <u>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누구</u> <u>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u> <u>에 설치할 것</u> ③ <u>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9조의</u> <u>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u> <u>규정에 따른 영상기록장치는 다</u> <u>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u> <u>치하여야 한다.</u> 1. <u>다음 각 목의 상황에 대한 영</u> <u>상이 모두 촬영될 수 있을 것</u> <u>가. 여객의 대기·승하차 및</u> <u>이동 상황</u> <u>나. 철도차량의 진출입 및 운</u> <u>행 상황</u> <u>다. 철도시설의 운영 및 현장</u> <u>상황</u> 2. <u>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이</u> <u>충격을 받거나 화재가 발생한</u> <u>경우 등 정상적이지 않은 환</u> <u>경에서도 영상기록장치가 최</u> <u>대한 보호될 수 있을 것</u> 제31조(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 ----- ----- <u>운전실 및 객차 출</u> <u>입문 등 운전업무종사자, 여객</u> -----
--	--

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 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1. ~ 4. (생 략)	----- ----- -----. 1. ~ 4. (현행과 같음)
--	---